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3223호
- 발의자 : 임춘대 의원(찬성자 19명)
- 발의일자 : 2025년 10월 20일
-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II. 제안이유

- 서울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 · 위치 · 면적 및 거래품목과 휴업일 및 영업시간을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고 있는 바, 해당 사항은 도매시장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조례로 상향 입법하고자 함.
- 아울러 도매시장의 위치 · 면적 및 거래품목을 현행화하고, 주 6일 근무와 장시간 · 심야시간 근무 등으로 인해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는 유통종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도매시장 인력이탈 및 구인난에도 대응하여 도매기능을 유지 · 강화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휴업일을 매월 1회씩 추가하되, 추가되는 휴업일은 산지 및 농수산물 유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별 · 월별로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비정기로 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 · 위치 · 면적 및 거래품목을 현행화하여 규정함(안 제2조의2, 안 별표 1).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휴업일과 개장일의 영업시간을 정하되 불가피한 경

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1회의 비정기휴업일을 추가함
(안 제2조의3, 안 별표 2).

IV.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V.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위치·면적·거래품목과 휴업일·영업시간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위치·면적·거래품목을 현행화하며, 유통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도매기능의 유지·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월 1회 비정기휴업일을 추가하고자 발의됨.

2.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현황

-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가격 유지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 4개소를 개설하고, 이 중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이하 “노량진시장”)¹⁾을 제외한 3개소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로 하여금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 도매시장 개요 >

(단위: 톤, 개사, 명 / 2025. 11. 30. 기준)

도매시장명 (개장시기)	취급 부류	1일 평균 취급물량	유통종사자 수						
			도매시장 법인 (경매사)	시장 도매인	중도매인	매매 참가인	산지 유통인	하역인	직판 상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1985. 6.)	청과, 수산	7,499 ^{주1)}	9 (257)	-	1,712	168	4,387	1,196	871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2004. 2.)	청과	2,053	3 (38)	59	267	16	26	207	-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1988. 8.)	양곡	84	-	-	35	-	-	30	-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1971. 6.) ^{주2)}	수산	159	1 (11)	-	173	8	1,853	100	484

* 주1) 청과부류 7,268톤과 수산부류 231톤을 포함한 것임.

주2) 당초 1927년 12월 경성수산시장, 용산수산시장 등을 통합하여 서울역 근처에 개장하였으나, 1971년 6월 노량진으로 이전하여 재개장한 것임.

1)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은 수협중앙회가 시설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그 자회사[수협노량진수산㈜]가 관리·운영하고 있음.

- 그리고 서울시가 개설한 4개의 도매시장은 2024년도에 총 295만 5천톤 규모의 농수산물을 거래하였으며, 이 중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의 경우에는 전국 48개소²⁾의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전체 물량(672만 4천톤) 중 33.8%³⁾에 해당하는 227만 1천톤을 거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유통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서울시 도매시장의 연도별 거래실적 >

(단위: 천톤, 억원)

연도	합계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양재동 양곡 도매시장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 0 2 0	3,080	66,782	2,373	50,768	624	12,106	29	674	54	3,233
2 0 2 1	3,011	69,440	2,308	52,563	616	12,799	32	825	54	3,252
2 0 2 2	2,998	72,762	2,317	55,470	599	13,101	30	715	52	3,476
2 0 2 3	2,929	76,785	2,267	58,677	584	13,877	29	738	48	3,493
2 0 2 4	2,955	80,891	2,271	61,826	609	14,948	29	731	46	3,387
2 0 2 5 (11월말 기준)	2,750	72,154	2,115	54,469	568	13,888	23	633	44	3,164

- 한편, 공사는 가락시장의 유통종사자들이 고령화되고 주 6일 동안 장시간 야간에 근로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어 인력이탈 및 구인난이 심화됨에 따라 2023년도부터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 운영’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가락시장에서 동절기·비수기 중심으로 시범휴업을 실시하여 ▶ 휴업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응하도록 하고 ▶ 전문기관이 시범휴업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도입방안을 마련하려는

2) 공영도매시장 33개소, 일반법정도매시장 12개소, 민영도매시장 3개소가 포함된 것임.

※ 투자주체를 기준으로 한 도매시장 구분

- 공영도매시장 :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투자를 통해 개설한 시장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등)
- 일반법정도매시장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투자를 받아 개설한 시장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등)
- 민영도매시장 : 민간인 등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시장

3) 2024년도에 전국의 공영도매시장(33개소)에서 거래된 물량(652만 9천톤) 중에서는 34.8%의 비중을 차지함.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4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2025. 6), p.3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월 1회 수준의 휴업일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 운영’ 추진 현황>

□ 추진 배경

- **가락시장 종사자 주6일 장시간 야간근로 등 근무환경 열악**
 - ▶ 가락시장 연간 개장일은 305일(일요일 이외 휴업일은 신년, 설·추석 등 연간 8일)
※ 일본 동경도 도매시장 연간 개장일은 253일로 주5일제 시행 중
 - ▶ 종사자 82%가 장시간 야간근로(35%는 일 10시간 초과 근무) … 2024년 7월 설문
 - **피로 누적에 따른 도매시장 유통 인력 이탈 및 구인난·고령화 심각 상태**
 - ▶ 60대 이상 중도매인 57%(10년 후 86%), 청과 하역인 50%(10년 후 87%)
 - ▶ 중도매인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 인력확충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한계
※ 최근 구인난이 도매시장법인까지 확산되어 경매사도 구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심화됨
 - 현재 상태의 인력 이탈 및 고령화 방지 시 가락시장 도매기능 위축으로 인한 생산자·소비자 피해가 전달되는 악순환 불가피
- ⇒ 도매 기능 강화를 통한 생산·출하자 보호를 위해 개장일 탄력 운영 추진

□ 추진 방향

- <기본방향> 중장기적(단계적)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적 운영 추진

가락시장은 국내 농산물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현 시점에 전면 주 5일제가 아닌 중장기적인 ‘단계적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적 운영’ 추진

- ▶ 우선 출하 물량이 적고, 기온이 낮아 출하조절·품질관리가 용이한 동절기, 비수기를 중심으로 시범휴업 실시
- ▶ 산지의 저장여건,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한 저온·저장시설 확충 시기 등 고려 월 1회 수준 휴업일 도입 후, 추가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 <시범사업> 시범휴업을 통해 대내외 공감대 조성 및 적정 방안 도출
- <추진절차> 생산자, 유통주체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

□ 추진 경과 및 결과

- 추진 경과
 - ▶ 1차 시범휴업 실시 완료(토요일에 3일 실시)
 - ▶ 2차 시범휴업 실시 완료(수요일에 2일 실시)
 - ▶ **3차 시범휴업 실시 중(토요일에 4일 실시 예정)**

구 분	1차 시범사업(추진완료)	2차 시범사업(추진완료)	3차 시범사업(추진중)
휴업횟수	3회	2회	4회
휴 업 일	2023. 11. 4.(토) 2023. 12. 2.(토) 2024. 3. 2.(토)	2025. 2. 12.(수) 2025. 3. 5.(수)	2025. 11. 1.(토) 2025. 12. 3.(토) 2026. 3. 7.(토) 2026. 4. 4.(토)
운영방안	경매 미실시(정가·수의,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한 거래 가능)		

- 1·2차 시범사업 추진결과

- ▶ 시범휴업 당일 거래현황 : 시범휴업 거듭될수록 정가·수의거래 점진적 증가
 - (1차 시범휴업 일평균 거래물량 194톤, 거래금액 4.6억원
→ 2차 시범휴업 일평균 거래물량 345톤, 거래금액 16.5억원)
- ▶ 1·2차 시범휴업(총 5일 휴업)에 대한 전문기관 분석 결과 : 시범휴업 다음 날 반입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출하자가 우려하는 경락 가격 하락 효과는 없음(다만 토요일에 비해 수요일 휴업이 가락시장 가격 결정 메커니즘에 변동성을 확대시킨다는 분석 결과가 나타나 토요일 휴업이 보다 안정적)

□ 향후 추진 계획

-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 운영 3차 시범사업 원활한 추진(~2026. 4.)
- **2026년 하절기 등 4차 시범휴업 확대 논의(2025. 12.~2026. 3.)**
- 주요 산지 출하단체 간담회 등 공감대 형성 노력 지속(2025. 11.~)

3. 개정안의 세부 내용

가. 명칭·위치·면적·거래품목 규정 조례에 신설 및 현행화(안 제2조의2, 안 별표 1)

- 서울시가 개설한 도매시장의 명칭 · 위치 · 면적 · 거래품목은 현재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이하 “도매시장 조례”)의 시행규칙 제2조와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 해당 사항을 조례로 직접 규정하고 ▶ 도매시장의 위치 · 면적 · 거래품목을 수정(현행화)하기 위해 안 제2조의2와 안 별표 1을 신설하려는 것임.

< 현행 시행규칙과 일부개정조례안 간 내용 비교 >

현행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u>제2조(도매시장의 개설 및 거래품목)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 · 위치 · 면적 및 거래품목은 별표 1과 같고, 거래품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가공한 물품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u></p>	<p><u>제2조의2(도매시장의 개설 및 거래품목) 서울특별시(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 · 위치 · 면적 및 거래품목은 별표 1과 같고, 거래품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가공한 물품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u></p>																								
<p>[별표1]</p> <p>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명칭 · 위치 및 면적과 거래품목(제2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도매시장명</th> <th rowspan="2">위치</th> <th colspan="2">면적(m²)</th> <th rowspan="2">거래품목</th> </tr> <tr> <th>대지</th> <th>건물</th> </tr> </thead> <tbody> <tr> <td>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td> <td>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600)</td> <td>542,920</td> <td>261,821</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심류 중 수삼 및 유지 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산선한것 선어류, 패류, 건어류, 활어내수면어 포함, 염장어류, 해조류 및 것갈류 조수육류, 난류 및 1차부수물 </td> </tr> </tbody> </table>	도매시장명	위치	면적(m ²)		거래품목	대지	건물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600)	542,920	261,8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심류 중 수삼 및 유지 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산선한것 선어류, 패류, 건어류, 활어내수면어 포함, 염장어류, 해조류 및 것갈류 조수육류, 난류 및 1차부수물 	<p>[별표 1]</p> <p>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 · 위치 및 면적과 거래품목(제2조의2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도매시장명</th> <th rowspan="2">위치</th> <th colspan="2">면적(m²)</th> <th rowspan="2">거래품목</th> </tr> <tr> <th>대지</th> <th>건물</th> </tr> </thead> <tbody> <tr> <td>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td> <td>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600)</td> <td>543,451</td> <td>501,581</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심류 중 수삼 및 유지 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산선한것 선어류, 패류, 건어류, 활어내수면어 포함, 염장어류, 해조류 및 것갈류 <p>〈삭제〉</p> </td> </tr> </tbody> </table>	도매시장명	위치	면적(m ²)		거래품목	대지	건물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600)	543,451	501,5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심류 중 수삼 및 유지 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산선한것 선어류, 패류, 건어류, 활어내수면어 포함, 염장어류, 해조류 및 것갈류 <p>〈삭제〉</p>
도매시장명			위치	면적(m ²)		거래품목																			
	대지	건물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600)	542,920	261,8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심류 중 수삼 및 유지 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산선한것 선어류, 패류, 건어류, 활어내수면어 포함, 염장어류, 해조류 및 것갈류 조수육류, 난류 및 1차부수물 																					
도매시장명	위치	면적(m ²)		거래품목																					
		대지	건물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600)	543,451	501,5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심류 중 수삼 및 유지 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산선한것 선어류, 패류, 건어류, 활어내수면어 포함, 염장어류, 해조류 및 것갈류 <p>〈삭제〉</p>																					

현행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농수산물 단순기공물품				• 농수산물 단순기공물품	
서울특별시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강서구 발신로 40 (외발신동 427)	209,759	114,079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및 유자재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 농수산물 단순기공물품	강서구 발신로 40 (외발신동 427)	213,032	131,665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및 유자재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 농수산물 단순기공물품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목도매시장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36 (양재동 223)	30,027	17,021	• 양목류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36 (양재동 223)	32,095	18,000	• 양목류	
서울특별시 노원군 수산물도매시장	동작구 노들로 688 (노원진동 3-8)	18,837	21,594	• 생선어류, 건어류, 염전어류, 염장어류, 폐류, 해조류 및 젓갈류	동작구 노들로 674 (노원진동 334)	40,174	118,346	• 생선어류, 건어류, 염전어류, 염장어류, 폐류, 해조류 및 젓갈류	

- 이는 명칭·위치·면적·거래품목이 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을 고려하여 의회 의결대상인 조례로 직접 규정하고,⁴⁾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위치·면적·거래품목이 현재의 실정과 부합되지 않아 자치법규와 행정현실이 일치되도록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임.
- 다만, 시행규칙의 별표 1은 2015년 7월 1일 전부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이 규정한 것으로, 서울시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 전부개정(2015. 7.) 이후의 여건 변화⁵⁾를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전부개정 당시 이미 현실화되어 있던 내용⁶⁾조차 법제화하지 않고 현실과 규정이 불일치하는 상태를 오랜 기간 방치해 온 바,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4) 참고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기도 구리시, ▶ 경기도 수원시, ▶ 경기도 안산시, ▶ 경기도 안양시, ▶ 충청북도 청주시, ▶ 충청북도 충주시, ▶ 충청남도 천안시, ▶ 경상북도 구미시, ▶ 경상북도 김천시, ▶ 경상북도 안동시, ▶ 경상북도 영천시, ▶ 경상북도 포항시, ▶ 경상남도 진주시, ▶ 경상남도 창원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전라남도 광양시, ▶ 전라남도 순천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도매시장의 명칭·위치·면적·거래품목을 ‘시행규칙’이 아닌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5)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1단계·2단계 사업완료(1단계: 2015년 완료, 2단계: 2024년 완료) 등.

6) 강서시장의 폐지된 도로부지 편입 및 친환경학교급식 1센터 완공에 따른 면적 증가(2009년), 가락시장 축산물 공판장의 음성 이전(2011년), 양곡시장의 철도부지 편입 및 종소유통물류센터 완공에 따른 면적 증가(2012년) 등.

< 시행규칙 대비 개정조례안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별표 1 관련) >

현행 시행규칙과 비교할 때 변경된 내용	변경사유
1. 현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상향 입법	◦ 도매시장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시의회 의결대상인 조례로 규정함.
2. 규정내용 현행화	◦ 행정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규정내용 수정
2-1. 가락시장 면적(m^2) 수정 ◦ 대지 : 542,920 → 543,451 (531 증) ◦ 건물 : 261,821 → 501,581 (239,760 증)	◦ 2015년 완료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1단계(가락몰 건립), 2024년 완료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2단계(채소2동 건립) 등을 반영하여 대지·건물면적 수정
2-2. 가락시장 거래품목에서 “조수육류, 난류 및 1차 부산물” 삭제	◦ 2011년 농협 축산물 공장장의 음성 이전에 따라 축산부류를 거래품목에서 제외
2-3. 강서시장 면적(m^2) 수정 ◦ 대지 : 209,759 → 213,032 (3,273 증) ◦ 건물 : 114,079 → 131,665 (17,586 증)	◦ 2009년 서울시 외곽 폐지우회도로 부지의 강서시장 편입 등을 반영하여 대지면적 수정 ◦ 2009년 완공된 친환경학교급식 1센터, 2011년 완공된 친환경학교급식 2센터, 2015년 완공된 식품종합상가, 2018년 완공된 시장도매인 F동 등을 반영하여 건물면적 수정
2-4. 양재시장 면적(m^2) 수정 ◦ 대지 : 30,027 → 32,095 (2,068 증) ◦ 건물 : 17,021 → 18,090 (1,069 증)	◦ 2012년 철도부지를 양곡시장에 편입한 것 등을 반영하여 대지면적 수정 ◦ 2012년 완공된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등을 반영하여 건물면적 수정
2-5. 노량진시장 위치 수정 ◦ 동작구 노들로 688 (노량진동13-8) → 동작구 노들로 674 (노량진동 334)	◦ 2015년 완료된 현대화사업에 따라 시장 위치 같은 동(洞) 내에서 일부 이전된 것을 반영
2-6. 노량진시장 면적(m^2) 수정 ◦ 대지 : 18,837 → 40,174 (21,337 증) ◦ 건물 : 21,594 → 118,346 (96,752 증)	◦ 2015년 완료된 현대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대지·건물면적 수정

나. 휴업일·영업시간 규정 및 비정기휴업일 추가(안 제2조의3, 안 별표 2)

- 도매시장의 휴업일과 영업시간의 경우 현재는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와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동 개정조례안은 ▶ 해당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 매월 1회의 비정기휴업일을 추가하기 위해 안 제2조의3과 안 별표 2를 신설하려는 것임.

< 현행 시행규칙과 일부개정조례안 간 내용 비교 >

현행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제3조(정기휴업일 및 영업시간) 도매시장의 정기 휴업일 및 개장일의 영업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 시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p> <p>[별표 2]</p> <p>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정기휴업일 및 영업시간(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정기휴업일</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영업시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10px;">양곡부류</td> <td style="padding: 10px;">일요일, 1월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하계휴무(1일)</td> <td style="padding: 10px;">07:00 ~ 18:00</td> </tr> <tr> <td style="padding: 10px;">청과부류 수산부류</td> <td style="padding: 10px;">일요일, 1월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하계휴무(1일)</td> <td style="padding: 10px;">00:00 ~ 24:00</td> </tr> </tbody> </table> <p>※ 하계 휴무일은 도매시장별로 정한다. 1. 가락시장 : 8월 첫째주 토요일 2. 기타 시장(강서, 양곡, 노량진시장 등) : 7월 마지막주 토요일</p>	구 분	정기휴업일	영업시간	양곡부류	일요일, 1월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하계휴무(1일)	07:00 ~ 18:00	청과부류 수산부류	일요일, 1월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하계휴무(1일)	00:00 ~ 24:00	<p>제2조의3(휴업일 및 영업시간) 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개장일의 영업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 시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p> <p>[별표 2]</p> <p>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제2조의3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구 분</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휴업일</th>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영업시간</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정기 휴업일</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비정기 휴업일</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10px;">양곡부류</td> <td style="padding: 10px;">일요일, 1월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하계휴무(1일)</td> <td style="padding: 10px;">매월 1회 <u>휴업일</u></td> <td style="padding: 10px;">07:00 ~ 18:00</td> </tr> <tr> <td style="padding: 10px;">청과부류 수산부류</td> <td style="padding: 10px;">일요일, 1월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하계휴무(1일)</td> <td style="padding: 10px;">매월 1회 <u>휴업일</u></td> <td style="padding: 10px;">00:00 ~ 24:00</td> </tr> </tbody> </table> <p>※ 하계 휴무일은 도매시장별로 정한다. 1. 가락시장 : 8월 첫째 주 토요일 2. 기타 시장(강서, 양곡, 노량진시장 등) : 7월 마지막 주 토요일</p>	구 분	휴업일		영업시간	정기 휴업일	비정기 휴업일	양곡부류	일요일, 1월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하계휴무(1일)	매월 1회 <u>휴업일</u>	07:00 ~ 18:00	청과부류 수산부류	일요일, 1월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하계휴무(1일)	매월 1회 <u>휴업일</u>	00:00 ~ 24:00
구 분	정기휴업일	영업시간																						
양곡부류	일요일, 1월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하계휴무(1일)	07:00 ~ 18:00																						
청과부류 수산부류	일요일, 1월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하계휴무(1일)	00:00 ~ 24:00																						
구 분	휴업일		영업시간																					
	정기 휴업일	비정기 휴업일																						
양곡부류	일요일, 1월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하계휴무(1일)	매월 1회 <u>휴업일</u>	07:00 ~ 18:00																					
청과부류 수산부류	일요일, 1월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하계휴무(1일)	매월 1회 <u>휴업일</u>	00:00 ~ 24:00																					

- 이와 관련하여 공사는 단기적으로 월 1회 수준의 휴업일을 가락시장에 도입하기 위해 2023년도부터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 운영’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려 하고 있으나, 산지 출하자와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간은 물론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하역인 등 유통종사자 간에도 이해관계가 상이하여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이러한 가운데 공사는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 운영’의 일환으로 1차·2차

시범휴업을 이미 추진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3차 시범휴업이 종료된 후 2026년도에는 4차 시범휴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1·2차 시범휴업의 경우 유통종사자에게 연간 2일 이하의 휴업일만 부여되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지 못하면서도 산지 출하자로부터는 불과 5일간 실시된 시범휴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데이터가 충분치 못해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추진완료된 시범사업(1차·2차)에 따른 연도별 휴업 내역 >

구 분	1 차 · 2 차 합 계	1차 시범사업		2차 시범사업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휴 업 일 수	3년간 총 5일 휴업	2일	1일	2일
휴 업 일		2023. 11. 4.(토) 2023. 12. 2.(토)	2024. 3. 2.(토)	2025. 2. 12.(수) 2025. 3. 5.(수)

* 당초 1차 시범휴업은 4일간, 2차 시범휴업은 3일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산지여건과 물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1일씩 축소 시행되었음.

- 또한 가락시장을 제외한 3개 도매시장에서는 현재까지 시범휴업조차 추진되지 않아, 일부 시장(가락시장)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전체 시장(4개소)에 대해 제도적으로 휴업일을 확대하는 시기는 불분명한 상황임.
-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일본의 동경도 도매시장과 같이 주 5일제를 시행하는 것은 제반 여건⁷⁾이 갖추어진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할지라도, 월 1회 수준의 휴업일 도입은 유통종사자에게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도매기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안건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임.
- 아울러 동 개정조례안은 매월 1회 추가되는 휴업일을 특정 날짜나 요일로 지정된 ‘정기휴업일’로 규정하지 않고, 산지 여건이나 농수산물 유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별로, 그리고 동일 도매시장 내에서도 월 별로 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비정기휴업일’로 규정하고 있음.

7) 저장시설 등 인프라 구축, 정가수의매매 확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

- 이는 의무휴업일 추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획일화된 날짜나 요일로 지정하지 않고 시장별·시기별로 유동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다만 개정조례안의 경우 발의 이후에 입법예고, 토론회, 중앙부처의 의견조회 결과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명되었으므로 이를 참고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첫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⁸⁾에 따라 10월 28일부터 5일간 입법예고⁹⁾한 결과 ▶입법예고 게시물의 댓글 형식으로 170건, ▶공문으로 2건, ▶전자우편(이메일)으로 1건, ▶서면(인쇄물)으로 3건, ▶의회신문고로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이 중에는 수산 부류를 중심으로 제기된 반대의견은 물론 노량진시장 중도매인조합에서 제출한 찬성의견도 포함되어 있음 [참고자료 1].
 - 둘째, 동 안건은 일부개정조례안에 해당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¹⁰⁾에 따라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여야 할 사안은 아니나, 휴업일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2월 2일 토론회¹¹⁾를 개최한바, 토론회 당시 전문가(지정토론자)와 이해관계자 등(참석자)은 찬성·반대의견뿐만 아니라 보완책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참고자료 2].

8)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입법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 내용·전문(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생략 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제3항 생략)

9)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585호, 2025. 10. 28.)

10)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위원회의 심사)

⑤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11) 「도매시장 의무휴업일 도입을 위한 토론회」(2025. 12. 2. 14시~16시, 서울특별시의회 주최, 임춘 대 기획경제위원장 주관).

- 셋째, 휴업일 추가는 “농안법” 1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나, 지난 11월 26일 서울시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2개 부처 모두 ‘조례로 비정기휴업일을 추가하기에 앞서 시범휴업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여, 동 개정조례안이 의결되더라도 중앙부처의 승인을 거쳐 시행될 수 있다고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임.

< 비정기휴업일 추가에 대한 중앙부처 회신내용 >

부처명	회신내용
농림축산 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수용 곤란></u>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 운영은 현재 시범운영 단계로 성수기 휴무에 대한 출하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비수기 한정 탄력 운영* 중으로 <u>성수기 휴무 등 단계적 시범운영을 통해 출하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무 실적 : ‘23.11.4.(토), ’23.12.2.(토), ‘24.3.2.(토), ’25.2.12.(수), ’25.3.5.(수), ’25.11.1.(토)
해양 수산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산물은 시간 경과에 따라 품질이 빠르게 저하하므로, 휴업일을 추가하는 방안은 물류 흐름과 품질 관리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휴업일 증가 시 시장 운영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음. 일부 중도매인 역시 휴업일 추가에 대해 영업 차질 가능성은 제기한 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p>→ <u>제도 시행 이전 시범운영 기간을 충분히 마련하여 시장 영향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u></p>

※ 자료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4999 (2025. 12. 5.)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5330 (2025. 12. 2.)

- 넷째, 서울시의 주관부서(민생노동국 농수산유통과)도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중앙부처에서 불승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검토의견 >

- 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 등 운영·관리의 주요사항을 조례로 상향 입법하고, 도매시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개장일을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함.
- 다만, 산지 출하자와 구매자 등 관련 주체들 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통해 휴업일을 추가할 경우, 유통주체 간 갈등이 심화되어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정부 소관 부처에서 해당 조례 개정안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입법조사관	연락처
강 민 수	02-2180-8062

[참고자료 1]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2025. 10. 28.~11. 1.) 결과 제출된 의견

구분	제출일자	제출된 의견 개요
시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물에 댓글 형식으로 남겨진 의견 (총 170건)	2025. 10. 28. ~ 2025. 1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 170건^{주1)} ◦ 주요 반대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조례안은 도매시장 관계자 중 유통중사자(중도매인) 일방의 주장만 반영된 것임. ▶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부재. ▶ 어획량 조절이 어렵고 부패 속도가 빠르며 신선도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수산물의 특성 고려 필요. ▶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이익 저하 및 자본잠식 우려. ▶ 출하 제한에 따라 어업인(출하자), 도매인 등의 생계 부담 증가 우려. ▶ 경매 공백으로 수산물 공급 차질, 신선도 저하 및 가격 변동성 확대에 따라 소비자 피해 확대. ▶ 교대근무 등을 통해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함.
수협중앙회 ^{주2)} 가 공문과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제출한 의견	2025. 10.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 ◦ 주요 반대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조례안은 도매시장 관계자 중 일부(중도매인)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음. ▶ 수산물은 농산물과 달리 계획적인 생산이 어려워 도매시장 휴업 시 폐기 되거나 상품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 어업인(출하자)의 생계가 위협됨. ▶ 도매시장 휴무는 법인의 영업손실, 직판상인 판매물량 확보기회 상실, 소비자의 신선한 수산물 소비 불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조례의 취지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교대 휴무를 실시하는 등으로 별도 입법이 없이도 달성 가능함.
수협노량진수산 ^{주3)} 가 공문과 서면 ^{주4)} 으로 제출한 의견	2025. 10.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 ◦ 주요 반대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산지 어민(출하자)의 생존권 침해 우려. ▶ 수산물의 특성상 신선도 유지 및 유통 연속성이 매우 중요함. ▶ 노량진시장은 국민 식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유통공백 발생시 신선하지 않은 수산물이 유통되는 등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 주1) 의견제출기한(2025. 11. 1.) 경과 후 제출된 2건이 포함된 것임.

주2) 수협중앙회는 노량진시장의 시설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가락시장에서는 수협가락동공판장을 운영하고 있음.

주3)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는 노량진시장을 관리·운영하는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이면서, 노량진시장의 유일한 도매시장법인이기도 함.

주4) 의회에 방문하여 인쇄물로 제출한 것임.

구분	제출일자	제출된 의견 개요
수협노량진수산㈜ ^{주3)} 가 서면 ^{주4)} 으로 제출하고 의회신문고로 접수한 탄원서 (노량진시장 종사자 1,561명 연서)	2025. 11. 4. (서면 제출) 2025. 11. 24. (의회신문고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조례안을 철회하거나, 철회가 어렵다면 도매시장의 수산 부류는 비정기휴업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수정의결을 요청함. ◦ 주요 반대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업일이 강제되면 휴업 전날 출하물량이 집중되어 공급과잉 발생하고, 휴업 당일부터는 공급부족 발생되어 가격 폭등이 예상됨. ▶ 중도매인·소매인의 휴무일 전 과잉재고 확보로 인한 비용 증가, 휴무일 이후 가격변동으로 인한 부대비용 증가와 판매부진에 따른 매출 손실. ▶ 신선한 수산물 공급이 어려워 소비자도 피해. ▶ 어민들의 생계부담 급증. ▶ 입법예고된 내용은 산지 출하자뿐만 아니라 시장 종사자와도 사전 협의되지 않은 사항임.
노량진수산시장 중도매인조합이 서면 ^{주4)} 으로 제출한 의견	2025. 1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의견 ◦ 주요 찬성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6일의 장시간 아간근로 등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종사자 이탈 및 구인난 심화, 고령화 가속(2024년 기준 중도매인 중 60대 이상이 54.3%, 항운노조원 중 60대 이상이 86.5%) 등으로 향후 10년 내 신규 유통인 유치 및 육성에 실패할 경우 도매시장 정상기능 유지 및 시장존립이 위태로운 수준임. ▶ 대부분이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중도매인의 경우 84.8%)으로서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충원도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운 실정임. ▶ 노량진수산시장 중도매인조합은 2024년 11월 노량진수산시장 출하주협의회와 공동으로 도매시장법인인 수협노량진수산㈜ 측에 서울시와 도매시장법인[수협노량진수산㈜], 출하주협의회, 항운노조 등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한 후 가락시장처럼 개장일 감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협의가 2025년 12월 현재까지 일체 진행되지 않고 있음. ▶ 2025년 9월 노량진수산시장 중도매인조합에서 조합원 1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161명) 중 77.6%(125명)이 시범휴업 실시에 찬성하고 있으며, 응답자(155명) 중 64.5%(100명)이 향후 1년 내 주 5일 경매가 실시될 수 있도록 휴업일이 확대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 주 5일제가 시행된 지도 벌써 20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도매시장 개장일의 점진적인 감축은 시대의 흐름이며, 조례가 하루 빨리 개정되어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람. ▶ 휴업일 확대 대상에서 노량진시장을 제외해 달라는 것은 도매시장법인의 요청일 뿐, 노량진시장 유통인들은 휴업일 확대가 모든 도매시장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그리고 도매시장법인 측에서 제출한 탄원서도 실질적인 유통주체인 중도매인, 출하주, 항운노조가 배제된 채 소매상인 위주로 작성된 것으로 생각되고, 노량진시장 유통인 전체의 의견이 아님.

* 주3)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는 노량진시장을 관리·운영하는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이면서, 노량진시장의 유일한 도매시장법인이기도 함.

주4) 의회에 방문하여 인쇄물로 제출한 것임.

[참고자료 2] 도매시장 의무휴업일 도입을 위한 토론회(2025. 12. 2.) 당시 지정 토론자 및 참석자가 제시한 의견

구분	제시한 의견 개요
지정 토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요지 : 매월 1회 휴업 도입 필요, 장기적으로는 주 5일제 도입 필요. ◦ 주요 토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6일제 운영은 오랜 세월 농수산물을 유통 발전에 기여했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가락시장 미래 불안의 주요한 원인. ▶ 시장종사자 세대교체 활성화, 시장의 지속 발전 및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서는 주 5일제로 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 기능이 존속·발전하게 되면 결국 생산자의 안정적인 영농을 보장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임. ▶ 당장 주 5일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매월 1회 휴업을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며, 단기적인 이해타산에 집중하기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변화를 가져와야 할 시점임. ▶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정가수의매매 및 온라인도매시장 활용, 산지 저온 저장시설 확충, 농안 법 보완 등의 보완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요지 : 가락시장 수산 부류 주 5일제 도입 즉시 시행 필요 ◦ 주요 토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락시장 종사자의 82%가 장시간 야간근로자, 그 중 35%는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며, 중도매인의 57% 60대 이상, 10년 후에는 86%가 60대 이상이 될 것(하역 인력도 절반이 60대 이상). ▶ 그러나 2021년 이후 89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2022년도에는 개장일 감축을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2023년도부터 시범휴업을 진행하여 월음에도 여전히 ‘동절기 중심 시범휴업’, ‘향후 10년에 걸쳐 단계적 도입’이라는 말만 듣고 있는 상황. ▶ 수산 부류는 특히 노동강도와 사고위험이 큰 분야이나, 힘든 일이라는 인식 때문에 젊은 인력의 유입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서둘러 주 5일제 시행이 필요함. ▶ 주 5일제 시행을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정가수의거래 및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등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이제는 동일한 말만 반복하기보다는 ‘시한과 로드맵’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할 시기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요지 : 인간다운 삶을 위해 월 1회 휴업이라도 추진되어야 함. ◦ 주요 토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매인을 비롯한 가락시장 종사자들은 병원이라도 다녀올 수 있도록 월 1회 휴업이라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 ▶ 주 5일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에는 중도매인도 수익 감소, 거래처 이탈 우려가 있어 전면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 월 1회 휴업이라도 추진되어야 함. ▶ 사람 하나 구하기 힘든 현재 상황을 방지하면 가락시장은 몇 년 안에 외국인만 기득한 시장으로 변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요지 : 가락시장의 정책이 전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휴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주요 토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락시장은 전국의 농수산물을 수집·분산할 뿐만 아니라 가격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

구분	제시한 의견 개요
	<p>권거래소와 같은 것(이른바 ‘농산물거래소’)으로, 가락시장의 제도 변경이 다른 지역까지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저온창고, 물류시설 등 인프라가 충분히 갖춤으로써 출하주가 상시 출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만 휴업일이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음. ▶ 아울러 휴업일 도입 시에는 수도권 도매시장과 휴업일을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유통주체 간 협의를 통해 출하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음.
농업제도정책 연구소 소속 토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요지 : 제3차 시범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2027년부터 매월 1회 휴무 또는 성수기 휴무를 추진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주요 토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 노동환경 개선은 인권 문제이면서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임. ▶ 다만 이해관계자 간 신뢰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기준 약속의 이행이 중시될 필요가 있음. ▶ 즉,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3차 시범사업은 계획대로 2026년 상반기까지 시행되어야 하며, 3 차 시범사업 추진결과 이상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2027년부터는 월 1회 휴무 또는 성수기 휴무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그리고 시범사업 추진 시에는 가격 요소 외에도 산지의 작업여건 악화, 비용 증가 등 제반 요소가 고려될 필요가 있음.
농산물 생산자 협의체 소속 토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요지 : 휴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한 후 의무휴업 추진 필요. ◦ 주요 토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정가수의매매,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가 50%를 넘고,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된 상황에서 의무휴업이 실시되었음. ▶ 도매시장 여건이 열악한 것은 농업인들도 공감하고 있지만, 휴업일 도입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가격 폭락, 농가 피해 등에 대해 충분히 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휴업이 추진된다면 농업인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음. ▶ 아울러 가락시장에서 주 5일제를 도입하면 전국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데, 보완책부터 마련한 후 의무휴업 도입 필요.
농업인 연합회 소속 토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요지 : 시간을 가지고 시범휴업 확대할 것을 제안, 휴업확대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부터 마련 필요. ◦ 주요 토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는 1·2차 시범휴업 결과 시범휴업 결과 가격하락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누적된 데이터가 적어 신뢰도가 낮고, 좀 더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가 있음. ▶ 가락시장이 농작물재해보험, FTA피해보전 직불, 비축지원, 채소가격안정제, 지자체 최저가격 보장제의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의무휴업이 가격 하향으로 이어질 경우 농가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음. ▶ 그리고 가락시장의 시범휴업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농업인 피해 증가가 확실시됨. ▶ 현재와 같은 조례 개정에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일단 교대근무를 통해 근로여건을 개선해되 시간을 가지고 시범휴업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며, 피해 입는 품목에 대한 대처방안부터 마련될 필요 있음.

구분		제시한 의견 개요
	어업인 협동조합 소속 토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요지 : 휴업일을 확대하기보다는, 서울시가 개설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 사람이 쉴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주요 토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 휴업일 확대로 인해 적정한 수확시기를 놓쳐 발생되는 농수산물 품질 저하, 경매가 하락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민의 몫이 됨. ▶ 휴업일 확대는 시장 내의 이해관계자들끼리만 합의·조정할 사안이 아니며, 출하자와 소비자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함. ▶ 영세사업장이 대부분이므로 교대근무가 어렵다는 부분은,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가 제 역할을 수행하여 청년세대 신규채용 지원, 하역비 현실화에 따른 추가비용 지원, 가락시장 내 시장도 매인제도 조기 도입, 영세 중도매인 합병 등을 추진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할 사안. ▶ 즉 휴업일 확대를 통해 시장 전체가 쉴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 사람이 쉴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수협노량진수산(주) 소속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요지 : 노량진시장의 특수성 고려한 논의 필요 ◦ 주요 토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량진시장은 매출 절반 이상이 활어로 구성되어 있어 휴업일 제도가 농산물과는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치므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함. ▶ 1,561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노량진시장에 대해 휴업일 추가가 적용되지 않아야 함.
참석자	노량진수산시장 상인회 소속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요지 : 즉각적인 휴업 도입보다는 수산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차별적 접근 필요 ◦ 주요 토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은 대부분 살아있는 상품이라 저장과 보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매가 없는 날은 동일 품목의 가격이 올라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되고, 휴업일이 늘어나면 이러한 가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시장 전체를 멈추는 휴업일의 확대가 아니라, 시장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종사자가 교대로 쉴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봄.
	노량진수산시장 종도매인조합 소속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 요지 : 개정조례안에 따른 휴업일 추가는 노량진시장을 포함 4개 도매시장 모두에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야 함. ◦ 주요 토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도에 노량진수산시장 종도매인조합 조합원 1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61명이 참여해 77.6%가 시범휴업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변을 했음. ▶ 시범휴업에 찬성하는 이유는 모두가 이는 바와 같이, 구인난이 심각하고 젊은 층이 유입되지 않아 현재와 같은 노동여건 하에서는 시장을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월 1회 휴업이 곧바로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변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는 있고, 개정 조례안에 따른 휴업일 추가를 4개 도매시장에 모두 적용하지 않고 노량진시장만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함.